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89호 2023. 2. 28.(화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3-32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 • • • • • • • • • • • • • • • • 3
○ 하동군 고시 제2023-3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 • • • • • • • • • • • • • • • • • 4
○ 하동군 고시 제2023-34호 2023년 사방사업 사방지 지정 고시 • • • • • • • • • • 6
○ 하동군 고시 제2023-40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 • • • • • • • • • 19
○ 하동군 고시 제2023-41호 하천점용 연장 허가고시 • • • • • • • • • • • • • • • • 20
○ 하동군 고시 제2023-42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 • • • • • • • • • • • • • • • • • 21
○ 하동군 고시 제2023-4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 • • • • • • • • • 22
○ 하동군 고시 제2023-44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 • • • • • • • • • • • • • • • • 23
○ 하동군 고시 제2023-45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 • • • • • • • • • 24
○ 하동군 고시 제2023-46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 • • • • • • • • • 25
○ 하동군 고시 제2023-47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 • • • • • • • • • 26
○ 하동군 고시 제2023-48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 • • • • • • • • • 27
○ 하동군 고시 제2023-49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 • • • • • • • • • 28
○ 하동군 고시 제2023-50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 • • • • • • • • • 29
○ 하동군 고시 제2023-51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 • • • • • • • • • 30
○ 하동군 고시 제2023-52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 • • • • • • • • • 31
○ 하동군 고시 제2023-53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 • • • • • • • • • • • • • 32
○ 하동군 고시 제2023-54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 • • • • • • • • • • • • • • • • 33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3-249호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 34
○ 하동군 공고 제2023-260호 하동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44
○ 하동군 공고 제2023-270호 하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48

일반공고

○ 하동군 공고 제2023-244호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록신청 공고 • • • • • • • • 60
○ 하동군 공고 제2023-248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 • • • • • • • • • • • • • • • 62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 공고 제2023-6호 2023년 농업소득과 과수분야 보조사업 추가 신청접수 63
○ 하동군 공고 제2023-278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 • • • • • • • • • • • • • • • 66
○ 하동군 공고 제2023-280호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 • • • • • 67
○ 하동군 공고 제2023-292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 • • • • • • • • • • • • • • • 89
○ 하동군 공고 제2023-294호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식음시설 운영사업자 모집 변경 공고 90

회 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제2023-32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사용 관련 법률」제5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02. 13.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9호
2. 허가연월일 : 2023. 02. 13.
3. 점·사용의 목적 : 진입도로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1241번지, 23㎡
5. 점·사용의 기간 : 2023.02.013.~ 2028.02.12.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 하동읍 부두길 81-83번지, 김영*

하동군 고시 제2023 - 33호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14.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길 92-5 외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2건)				

○ 도로명주소 폐지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2-3 외 13건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 지 참 조(1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2. 1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이동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188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길 92-5	-	20080402	20230214	회신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리 391-7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용강길 50-11	-	20070618	20230214	산등성이에 용이 산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70-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호계천로 93	-	20070618	20230214	도로구간이 호계천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하천명을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183-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길 11-30	-	20080402	20230214	법대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458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손오골길 57-1	-	20080402	20230214	손님을 맞이하는 골이라 하여 붙여진 옛지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573-4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길 12-7	-	20080402	20230214	뒷산의 형국이 반달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학리 614-1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마치길 21-13	-	20070618	20230214	마치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학리 산83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마치길 21-11	-	20070618	20230214	마치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354-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1길 27-25	-	20080402	20230214	양구라는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3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금오길 43-1	-	20080402	20230214	금오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29-3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금오길 41	-	20080402	20230214	금오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관리 12-1, 12-2, 12-2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대티길 44-22	-	20070618	20230214	대나무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대티란 지명을 반영	

하동군 고시 제 2023 - 34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21년 하반기(추가2차)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 합니다.

2023. 02. 15.

하 동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참조
2. 지정 사유 : 2023년 사방사업 시행지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4.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5.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하동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5-880-248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조서 및 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 도면 1부. 끝.

사방지 지정 조서

2023년사방사업(사방댐,계류보전,산지사방)-하동권역

토 지 소유자	성 명	남**씨**군파**대*자*부후손종중 외		
	주 소	경상남도 진*시 망*로 2*4-5, 1**동 1**2호 (망*동,망**보아파트) 외		
토 지 소 재 지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산197임 외		
조 사 년 월 일		2023년 2월 일		
사업계획 승인 년월일		2023년 2월 일		
사방지 지정 면적		6,162	㎡	
사방지 지정 사유		2023년도 사방사업을 실시할 지역에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정함.		

조 사 자 직 급 : 지방녹지주서기보

성 명 : 권 수 인 (인)

사방지 지정 내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 면적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비고 (사업명)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소	성명	
계					661,263	6,162			
하동	청암	상이	산197	임	88,959	269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로 234-5, 1**동 1**2호 (망경동,망경한보아파트)	남*씨대*군파십*대익**부후손종중	산지사방(하동청암상이지구)
			산198	임	19,882	80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로 234-5, 1**동 1**2호 (망경동,망경한보아파트)	남*씨대*군파십*대익**부후손종중	
			산198-1	구	625	35		국(국토교통부)	
			1970	구	6,286	45		국(국토교통부)	
	옥종	위태	산98	임	17,851	60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동 355성원3차아파트 **6동10**호	양*순	계류보전(하동옥종위태지구)
			산112-1	도	3,531	24		국(국토교통부)	
			677-2	임	393	11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63-3 고현주공아파트 1**-**4	강*진	
			683-2	답	1,574	13		김*미	
			678	답	2,446	3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안길 *1	강*갑	
			1730-3	구거	37,616	934		국(국토교통부)	
			883	답	50	13		민*목	
	북천	직전	산99-5	임	30,856	302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241번길 18, *동 **5호(달동,현우아파트)	정*한	계류보전(하동북천직전지구)
			1510-3	철	1,891	478		국(국토교통부)	
			760	답	1,078	26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 1**	정*연	

		산97-2	임	17,554	148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215 성저마을 3**동 90*호	김*규	
		751	전	1,415	4	하동군 북천면 곤북로 1**5-4	김*선	
횡천	학	산19	임	10,993	30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 **-6(수영로)	전*갑	계류보전(하동 횡천학지구)
		10	임	400	64	하동군 횡천면 횡보길 *2-3*	김*철	
		산20	임	1,423	57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5-1	장*섭	
		1149-2	구	1,568	541	하동군 횡천면 학리 9*	전*석	
		11	임	86	8	하동군 횡천면 학리	전*수	
		7-1	전	731	13	하동군 횡천면 횡보길 12-3*	김*철	
고전	성평	산39-2	도	2,876	5		국(국토교통부)	사방댐(하동고 전성평1지구)
		산40-1	도	33,521	12		국(국토교통부)	
		산39-3	임	3,510	62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681 태영아파트 **3동 4**호	이*경	
		산40-2	도	4,959	110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1**1	이*자	
		산38-4	구	3,639	489		국(국토교통부)	
		산38-2	임	40,633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6, *동 4**1호 (도곡동,타워팰리스아파트)	정*우	
		산37-1	임	34,925	38	하동군 금남면 진정리 6*6 하동군금남면진정리5*4	정*석 문*정	
고전	성평	산112-1	임	147669	615		하동군	사방댐(하동고 전성평2지구)
옥종	두양	산26-1	구거	9950	216		국(국토교통부)	사방댐(하동옥 종두양지구)
		산12	임	4959	21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1로 51, **8동 1**6호 (명지동,영어도시퀸덤1차)	성*기	
		산15-7	임	3306	127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친환경로*0*3번길 1*6	민*선	
		산26-1	임	25488	453	산청군 단성면 당산리 4*0-4	당*마을회	

	옥종	회신	산61	임	10081	138	적량면 관리 **-1	양*옥, 양*애	사방댐(하동옥종회신지구)
			산69	임	22512	28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은행나무길 6, *동 2**호(대*아파트)	권*식	
			산69-1	구	6081	146		국(국토교통부)	
			산70	임	18636	44	부산 서구 서대신동 1가 1**	조*래	
			890-19	구	41310	215		국(농림축산식품부)	

* 주의사항 : 고시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성명 및 주소 **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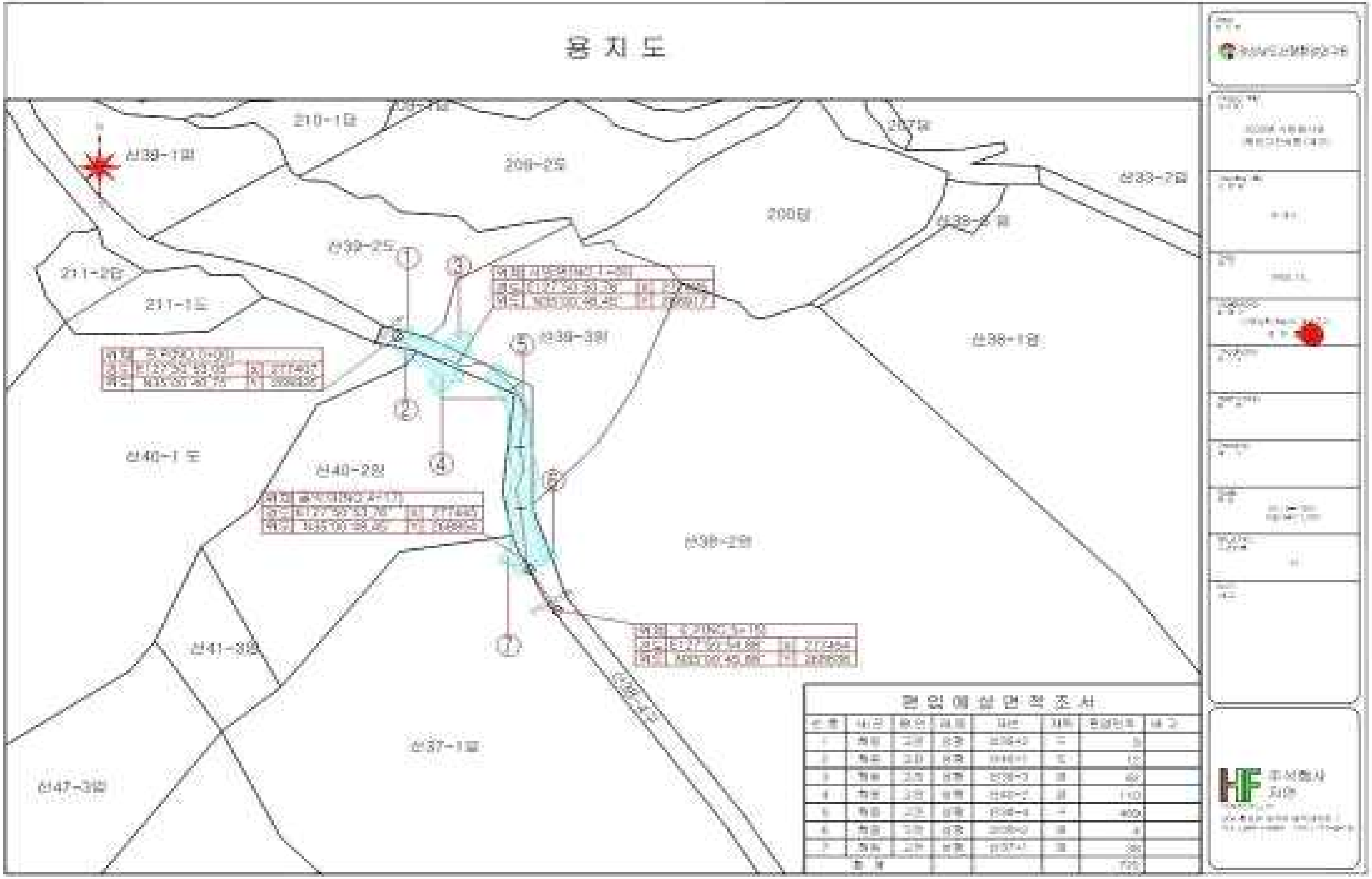
용 지 도
210-1답
산39-1임
209-2도
208답
산38-2임
211-2답
211-1도
산39-2도
산39-3임
산38-1임
산40-1 도
산40-2임
산38-2임
산41-3임
산37-1답
산47-3임
편 입 예 정 면 적 조 서

용 지 도
편입예상면적조사

용 지 도
SCALE = 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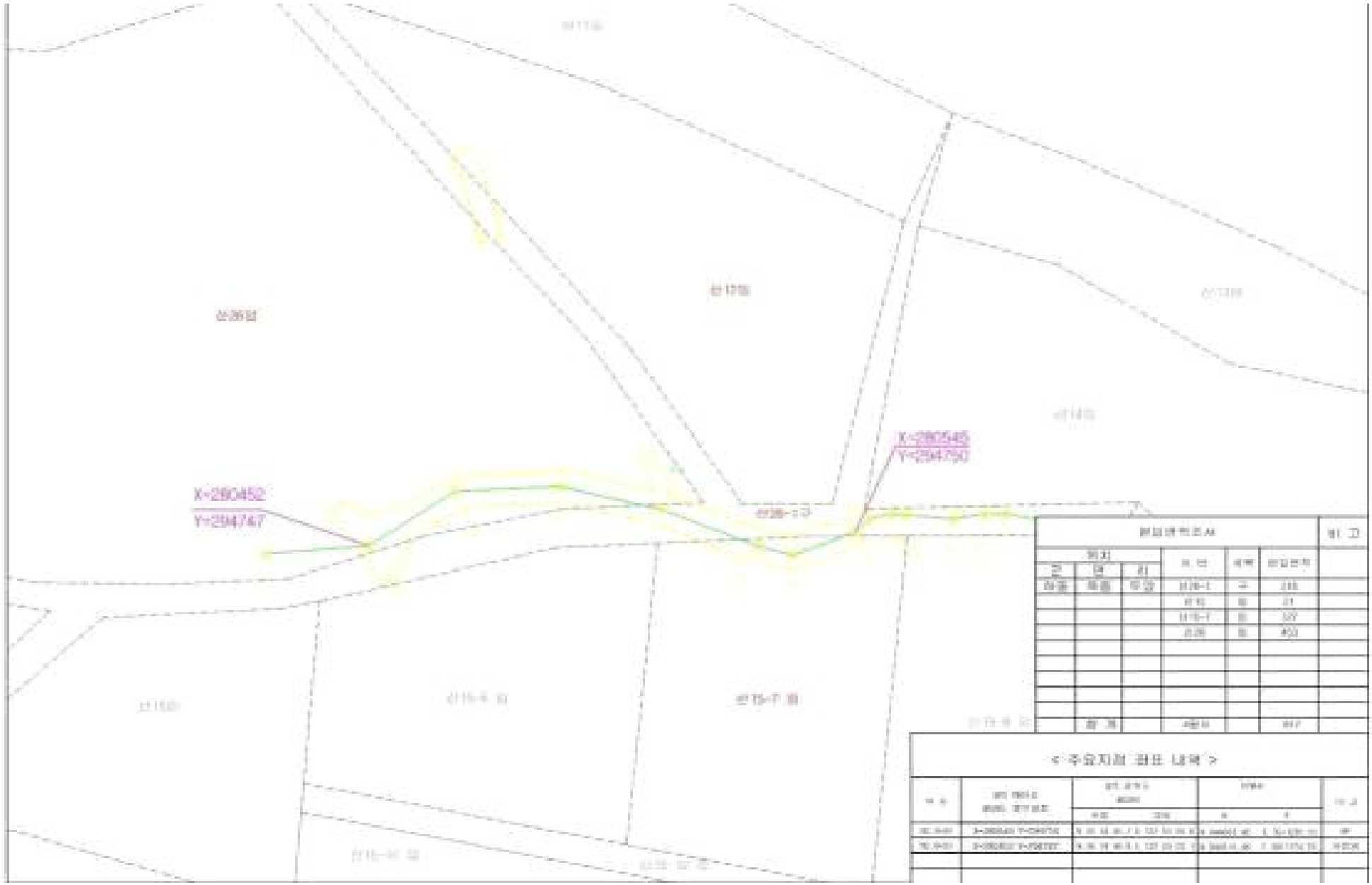
X=280452
Y=294747
X=280545
Y=294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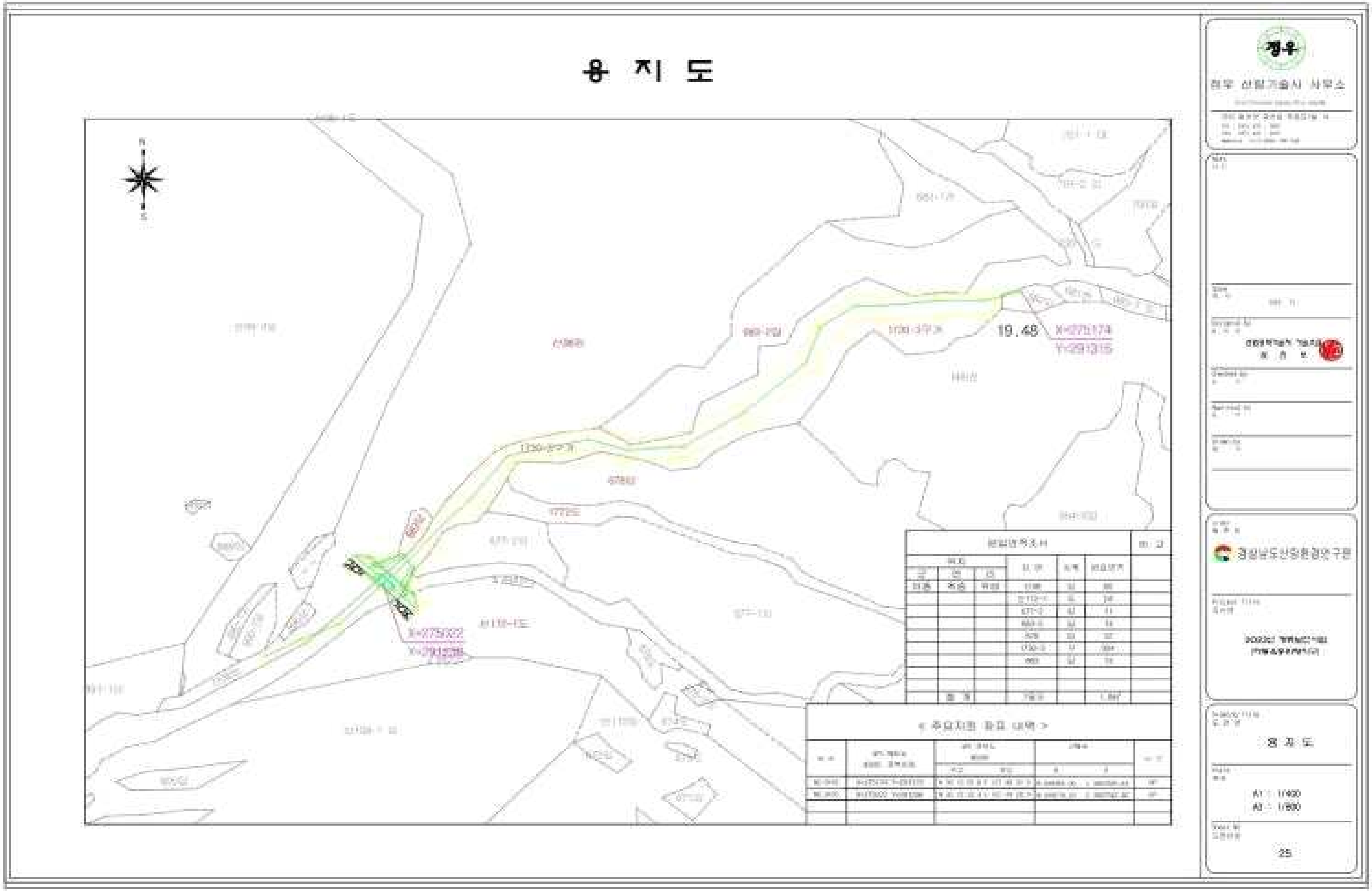
용 지 도
19.48
X=275174
Y=291315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용 지 도
A1 : 1/400
A3 : 1/800
25

용 지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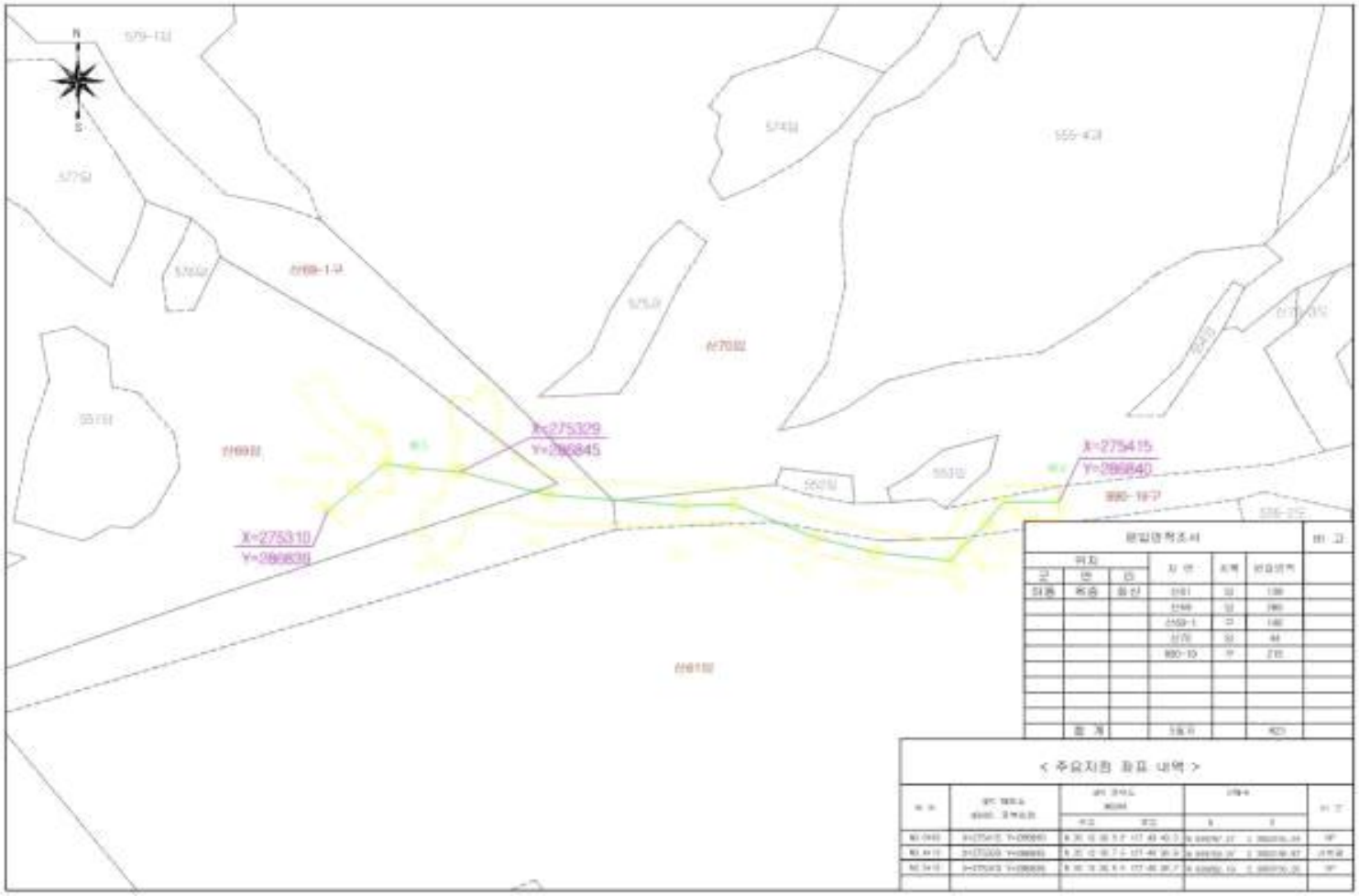

분필면적조서						비 고
위치			지 번	지목	분필면적	
군	면	리				
하동	북천	유신	산61	임	1,388	
			산68	임	2,860	
			산69-1	구	1,482	
			산70	임	44	
			880-10	구	278	
합 계			5필지		6071	

< 주요지점 좌표 내역 >

측점	좌표 (X, Y) 중부원점	경위도 좌표계 WGS84		지역내		비 고
		위도	경도	X	Y	
No.1(시점)	X=275415.10 Y=266840.00	N 35° 12' 00.5"	E 127° 45' 40.3"	X=[illegible]	Y=[illegible]	0°
No.2(중간)	X=275329.00 Y=266845.00	N 35° 12' 00.7"	E 127° 45' 38.4"	X=[illegible]	Y=[illegible]	시계방
No.3(종점)	X=275310.00 Y=266830.00	N 35° 12' 00.3"	E 127° 45' 38.7"	X=[illegible]	Y=[illegible]	0°

정우

정우 산림기술사 사무소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2022년 사업명사업
(기능성용품보급지구)

용 지 도

A1 : 1/300
A3 : 1/600

22

편 입 용 지 도
N
S
산198임
산198-1구
1976-1
산197임
신림환경연구원

용 지 도

SCALE = 1/1200

하동군 고시 제2023-40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2. 17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10
2. 허가연월일 : 2023. 2. 17.
3. 점·사용의 목적 : 태양광발전사업부지 진입도로사용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023번지 외 1필지, 12㎡
5. 점·사용의 기간 : 5년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방죽로 407번지, 손형*

하동군 제2023- 41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5조(권리 · 의무의 승계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 연장을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02.20

하 동 군 수

1. 허가번호 : 2006-2호
2. 하천의 명칭 : 횡천강
2. 허가연월일 : 2023.02.20.
3. 점용자 :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183-32
   하동수출재첩영어조합법인, 김정*
4. 점용의 목적 : 바닥식양식업
5. 점용위치 : 고전면 신월리 1492 (인접: 신월리1135)
6. 점용면적 : 22701㎡
7. 점용허가 기간 : 2022. 11.14.~2027. 11.13.

하동군 제2023 - 42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0.02.20.

하 동 군 수

1. 허가번호 : 2023-11호
2. 하천의 명칭 : 횡천강
3. 허가연월일 : 2023.02.20.
4. 점용자 : 하동군 회천면 청학로 211번지, 서인*
5. 점용의 목적 : 축사용 가건물
6. 점용위치 : 횡천면 월평리 1064번지(인접: 월평리651-1번지)
7. 점용면적 : 143㎡
8. 점용허가 기간 : 2023.02.14. ~2028.02.13. 5년

하동군 제2022 - 43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명의 이전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02. 21.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89호
2. 허가연월일 : 2023. 02. 21.
3.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4. 점·사용 장소 : 하동군 금남면 송문이 813번지
5. 점·사용의 기간 : 2022. 12. 23. ~ 2027. 12. 22.
6. 점·사용자 변경사항

구분	주소	면적(㎡)	점·사용자
당초	전남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6	25	김종호
변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6	25	김윤희 외1인

하동군 제2023 - 44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02.21.

하 동 군 수

1. 허가번호 : 2023-12호
2. 하천의 명칭 : 주교천
3. 허가연월일 : 2023.02.21.
4. 점용자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번지, 하동군청 기획예산과
5. 점용의 목적 : 하동세계차엑스포 홍보깃발 설치
6. 점용위치 : 금남면 계천리 732-1번지
7. 점용면적 : 300㎡
8. 점용허가 기간 : 2023.02.21. ~2023.06.30.

하동군 고시 제2023-45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02. 22.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15호
2. 허가연월일 : 2023. 02. 22.
3. 점·사용의 목적 : 옥외간판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화개면 탑리 865-2번지
   (인접:탑리 747번지), 1.44㎡
5. 점·사용의 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10, 강효*

하동군 고시 제2023-46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2. 23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14
2. 허가연월일 : 2023. 2. 23.
3. 점·사용의 목적 :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횡천면 학리 1149-2번지, 541㎡
5. 점·사용의 기간 : 2023.2.23. ~ 2023.2.30.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하동군 고시 제2023-47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2. 23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13
2. 허가연월일 : 2023. 2. 23.
3. 점·사용의 목적 :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산198-1번지 외1필지, 80㎡
5. 점·사용의 기간 : 2023.2.23. ~ 2023.2.30.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하동군 고시 제2023-48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2. 23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16
2. 허가연월일 : 2023. 2. 23.
3. 점·사용의 목적 :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산69-1번지 , 146㎡
5. 점·사용의 기간 : 2023.2.23. ~ 2023.2.30.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하동군 고시 제2023-49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2. 23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17
2. 허가연월일 : 2023. 2. 23.
3. 점·사용의 목적 :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1510-3번지 , 478㎡
5. 점·사용의 기간 : 2023.2.23. ~ 2023.2.30.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하동군 고시 제2023-50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2. 23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19
2. 허가연월일 : 2023. 2. 23.
3. 점·사용의 목적 :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산38-4번지 , 489㎡
5. 점·사용의 기간 : 2023.2.23. ~ 2023.2.30.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하동군 고시 제2023-51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2. 23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18
2. 허가연월일 : 2023. 2. 23.
3. 점·사용의 목적 :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산26-1번지 , 216㎡
5. 점·사용의 기간 : 2023.2.23. ~ 2023.2.30.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하동군 고시 제2023-52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2. 23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20
2. 허가연월일 : 2023. 2. 23.
3. 점·사용의 목적 :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1730-3번지 , 945㎡
5. 점·사용의 기간 : 2023.2.23. ~ 2023.2.30.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하동군 고시 제2023-53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2. 23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21
2. 허가연월일 : 2023. 2. 23.
3.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1017-1번지 , 40㎡
5. 점·사용의 기간 : 2023.2.23. ~ 2028.2.22.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길 52, 최진*

하동군 제2023 - 54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02.27.

하 동 군 수

1. 허가번호 : 2023-22호
2. 하천의 명칭 : 관곡천
3. 허가연월일 : 2023.02.27.
4. 점용자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번지,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5. 점용의 목적 : 성평교 위험 교량 재가설사업으로 인한 영구 점용 및 공사용 가도 설치에 의한 일시점용
6. 점용위치 : 진교면 관곡리 944-1번지
7. 점용면적 : 886㎡
8. 점용허가 기간 : 2023.02.21. ~ 영구점용.

하동군 공고 제2023-249호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5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2. 제안 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3조～제13조)
   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안 제14조)
   라.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안 제15조)
   마.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안 제16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3월 7일까지 하동군(참조 : 지역활력추진단, 전화 055-880-2842, FAX 055-880-7159, parkeejj@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동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하동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하동군의회가 추전하는 군의원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기관 및 단체 등의 임·직원, 회원이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탈퇴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하동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감소 대응업무의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3조(수당 등) ① 군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

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료 지급기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1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동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등 범죄 예방 사업

제15조(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6조(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3-260호

하동군 하동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제공

3. 주요 내용 : 하동군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3월 9까지 하동군 주민행복과(장애인담당, 전화 055-880-2215, FAX 055-880-7199, e-mail hyugi58@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하동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하동군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하동군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
2. 장애인복지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3. 장애인 욕구의 조사 및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연계 지원
4. 장애인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6.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한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교류 및 협력
7. 장애인복지 단체 및 시설 등의 지원·평가·자문
8. 그 밖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때는 상담원을 배치하고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③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4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수탁자는 운영비 등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센터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센터운영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주기별로 그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23-270호

하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하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1일

하 동 군 수

1. 행정규칙명 : 하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2. 제안 이유 :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사용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휴대용 보호장비 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4. 의견 제출
   이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하동군청 기획행정국 민원과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 메일 등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민원과 (우편번호 : 52333)
- 전화 : 055-880-2097, FAX : 055-880-2078
- 이메일 : geowiz@korea.kr

붙임 1. 하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정안 (별지 서식 포함)

【별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행정규칙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정(지침)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예규 제 호

하동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법행위 등”이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욕설·협박·성희롱 등의 폭언과 위협·폭행 또는 민원 처리 부서의 기물파손 행위를 말한다.
2.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
3.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이하 “영상” 이라 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

   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

   다. 녹화 시야각 120° 이상

   라. 녹화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4.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

한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음성의 녹음

나.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5.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

6.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 된 저장장치를 말한다.

7.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개인용 컴퓨터(PC) 또는 외장하드를 말한다.

8.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권익보호)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개인정보 보호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제4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진정 또는 자제 요청을 하였음에도 지속하여 위법행위 등을 하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

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황으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 사용해야 한다.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 전송 및 저장할 것
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이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전송 금지 (단, 제12조에 따른 증거물 제작 시는 예외로 한다.)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및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삭제 금지
5.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관리
6.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제7조에 따른 입출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반납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영상·음성의 녹화·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

2.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

3.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확인

4. 휴대용 보호장비 및 관련 기기 운영·관리

제6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지정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다만, 휴대용 보호장비를 빼앗기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무선 방식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2.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

제7조(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책임자(정): 사용부서 부서장

2. 관리책임자(부): 사용부서담당

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출고를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입·출고를 관리해야한다. 이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서 입·출고 내역을 출력하여 수기 대장을 대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부)를 입출고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휴대용 보호장비의 분실, 빼앗김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휴대용 보호장비 보안관리) 휴대용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는 관리책임자만 접속할 것

2. 무선으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할 것

제10조(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 및 운용) ①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이하 “법적조치 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 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다만, 법적조치 등을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이 필요하여 보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자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에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⑤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갱신해야 한다.

⑥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를 준용한다.

제12조(영상·음성기록 증거물 제작 및 제출)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CD,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 처리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사용자 교육)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최초 사용 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2.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지침
3.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내용

②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하동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음성·영상기록 증거물 관리 현황 (제5조제1항5호 관련)

연번	관리번호	음성·영상기록 관리			관리책임자		내 용 (민원인명, 기록 상황 등)
		기록일시 (기록장소)	민원처리 담 당 자	삭제일 (삭제자)	부	정	

[별지 제2호서식]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 입출고 현황 대장 (제7조제2항 관련)

연번	일자	일련번호	사용자		용도	출고시각	담당자 확인	입고시각	담당자 확인
			직급	성명					

[별지 제3호서식]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 등록대장 (제8조제1항 관련)

연번	일련 번호	모델명	제작 회사	제작 번호(S/N)	등록일	관리 책임자		해지일	관리 책임자		비 고 (해지사유 등)
						부	정		부	정	

하동군 공고 제2023-244호

2023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록신청 공고

2023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4일
하 동 군 수

1. 신청기간 : 2023. 2. 1. ~ 6. 23.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 이상일 경우 각각 해당 읍·면 사무소에 신청

3. 지급단가 : ha 당 60 ~ 100만 원 지급

○ 타작물 지원대상 작물 중 종류에 관련없이 동일단가 지원

- 23년 단가 60~100만원/ha(일반, 풋거름, 두류, 휴경, 조사료)

  * 조사료 : 21년 벼 재배농지 중 22년 조사료 재배농지로 22년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지원농지에 한해 사업지원

4. 대상 품목

○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 또는 휴경(벼 재배농지)

* 다년생 작물의 경우 '22년 신규전환 농지의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22년 다년생 작물 식재 참여 농지의 경우 해당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23년 신규작물(단년생)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5.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농지

- (1순위) '22년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3년 신규 타작물 전환 농지(조사료 제외)

  * 22년 벼 재배사실 확인 필요

- (2순위) - 22년도에 벼에서 타작물로 신규 전환 후 '23년 계속 타 작물 재배농지

* 22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대상 농지 중 조사료 작물재배 농지 포함

○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중 ’ 22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가 또는 ‘23년 신규 신청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또는 법인)은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비농업인은 주말체험영농으로 1,000미만 신청가능

6.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23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약정서, 벼 재배사실 확인서, 22년 타작물 재배사실 확인서, 조사료 재배농지 확인서

나. 제출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8. 신청시 유의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경우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 회수, 경상남도 지방보조금사업 등 참여 제한 및 제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 식량특작(880-2423)에 문의하시기랍니다.

하동군 공고 제2023 - 248호

공 고

하동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14.

하 동 군 수

1. 등록 및 폐기일 : 2023. 2. 14.
2. 등록 및 폐기사유 : 시설명칭 변경에 따른 등록 및 폐기
3. 등록 및 폐기공인

구분	공 인 명	글씨체 및 규격	인영	비고
등록	하동군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장인	한글전서체 2.1㎝ 정사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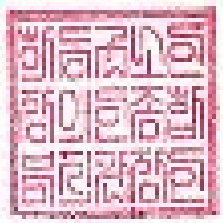	
폐기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장	한글전서체 2.0㎝ 정사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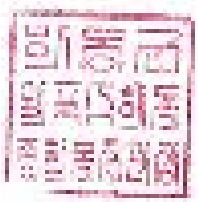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 공고 제2023-6호

2023년 농업소득과 과수분야 보조사업 추가 신청접수 계획

1 사업대상 및 신청요령

○ 사업대상

- 개 인 : 농가 경영체 등록농가
- 단 체 : 작목반, 영농회사법인, 영농법인

(법인등록 1년 이상 경과한 영농법인 단, 작목반이 영농법인으로 변경시에는 최초 작목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사업신청 시 사본첨부 또는 신청서에 확인가능 등록번호 기입

○ 읍면에서는 신청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신청

○ 농가(단체)별 **중복신청을 지양**하고, 가장 필요한 **1개 사업 신청** 접수,
최근 2년간 지원받지 않은 농가를 우선 지원

※ 2023년 타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영체는 신청접수 지양

○ 공동 또는 **단체**사업은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첨부함
(**대상지 지적도 또는 위치도 첨부**).

○ 사업신청 시 투입되는 기자재, 시설 등 산출근거 첨부

○ 지원제외

- 2022년도 사업확정 후 뚜렷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농가는 제외
- 지방세 등 체납세금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제외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공무원, 농협,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 신청사업이 하동군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보조 또는 융자 사업과 중복농가는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자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또는 단체

※ 작목반이나 단지 등 단체대표 경영체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속 회원들이 모두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대상필지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
- 사업부지 : 농지전용, 시설물설치 등에 법적 제한을 받지 않거나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함.

※ 사업별 별도요건(선정우선순위, 지원제외 조건 등)은 사업시행지침의 규정 적용

3 대상자 선정

○ 현지 타당성 조사 : 농업소득과 과수담당

- 확인내용 : 신청 면적 일치여부, 지원대상 품목 재배여부 등 사업별 평가표에 의거 우선순위 결정

※ 사정에 따라 서류심사로 갈음할 수 있음.

○ 대상자확정 : 농정 심의 후 보조사업별로 확정 시달

4 행 정 사 항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읍·면사무소

○ 홍보 및 신청접수기간 : 2023. 2. 20.(월) ~ 2023. 3. 3.(금)

○ 신청결과 제출 : 2023. 3. 6(월)까지

※ 신청서류 원본은 2023. 3. 8.(수)까지 제출

○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신청 경영체 심사표, 개인정보 동의서
- 사업대상 증빙 :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사업),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 사업별 지원계획

사 업 명	대상 작물	사업량	사업비	지원기준	사업내용	선정기준
과수 소규모 생산장비 지원	과수	20개소	57,318천원 보조:28,659 자담:28,659	5,000천원/개소	- 비파괴당도계, 토양수분측정기, EC측정기 등 측정장비 - 인공수분기, 화분채취기 등 인공수분장비 등	- 10a이상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 및 단체
경남 육성 신품종 과원조성 시범	감,사과	1개소	30,000천원 보조:24,000 자담:6,000	30,000천원/개소	- 신품종 묘목, 관수·덕·지주시설 등 재배 기반시설 - 단순 묘목 지원을 지양하고 관수시설 덕시설 등 설치를 통한 신규 과원 조성	- 경남도 육성 재배품종 희망농가 및 단체 ※ 대상품종 : 감(감누리, 올누리), 사과(마이, 화이트문) - 개소당 신규과원 20a이상 조성
과수 자연재해 경감지원	과수	60ha	25,222천원 보조:12,611 자담:12,611	타이벡 피복 13백만원/ha 저온피해경감제 300천원/ha	- 농업용 타이벡 피복, 저온피해 경감제 등	- 기 수요조사 신청농가 우선선정 - 면적당 단가기준 준수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과수	35.4㎡	4,000천원 보조:2,000 자담:2,000	1-MCP 110천원/3.3㎡	-과실 장기저장제 1-MCP지원 (에틸렌 억제제)	- 기 수요조사 신청농가 우선선정 - 면적당 단가기준 준수

※ 신청 작목 및 재배면적 등 신청내용은 경영체 등록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작성제출

※ 선정기준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하동군 공고 제2023 - 278호

공 고

하동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1.

하 동 군 수

1. 등록 및 폐기일 : 2023. 2. 21.
2. 등록 및 폐기사유 : 자동인증기 교체
3. 등록 및 폐기공인

구분	공 인 명	글씨체 및 규격	인영	비고
등록	민원사무전용 북천면장인(인증기)	한글전서체 2.1㎝ 정사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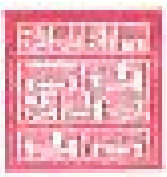	
폐기	민원사무전용 북천면장인(인증기)	한글전서체 2.3㎝ 정사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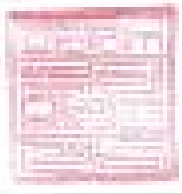	

하동군 공고 제2023-280호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2.

하 동 군 수

◆ **2023년도 지침 개정 시 변경공고를 통하여 개정사항이 반영되며, 지침개정 일정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자 선정발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접수물량 미달 시에는 별도 추가 공고없이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상시접수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 콜센터(1833-7435)로 확인)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사업예산) 1,290백만원

○ (사업규모) 693대 / 5등급 607대, 4등급 86대

※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으로 지원대수 유동적

○ (접수기간) 2023. 2. 22.(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①인터넷 ②등기우편 ③방문(군청 환경보호과)

① 인터넷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 : 우)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환경보호과) 조기폐차 담당자

③ 방문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방문(별관 1층)

○ (대상선정) 2022. 3. 10.(금) ~ ※ 최초 선정 후, 매월 말 선정

- 대상자 일괄 선정 후 문자 알림(필요 시 등기우편 발송)

○ (보조금 청구기간)

① 성능상태점검 및 폐차 후 조기폐차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② (신차)차량구매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 (보조금 청구방법) 하동군청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① 등기우편 : 우)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환경보호과) 조기폐차 담당자

② 방문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방문(별관 1층)

2 지원대상 : ①~ ⑦호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① (대상차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 콜센터(1833-7435)로 확인)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② (등록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하동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③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④ (차량상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상 '정상가동' 판정받은 자동차**(대상자 통보일 이후 검사 건에 한하여 유효함)**

⑤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⑥ (체납) 신청일 기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

3 선정 우선순위

① 대상자 선정 전 폐차를 신청하여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따른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서 폐차를 완료한 차량

② 저감장치 미개발(또는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명령 유예 받은 차량

③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④ 저소득층 소유차량, 영업용 등록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⑥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기준)

⑦ 이전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제외된 차량

4 지원금액 지원금(지원율, 상한액 등)은 지침개정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를 통해 반영됩니다.

○ (조기폐차 기본 지원)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총중량 3.5톤 이상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그 외 자동차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50%	차량기준가액의 70%	

○ (조기폐차 추가 구매 지원)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추가 구매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신차	중고차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구분	총중량 3.5톤 미만 그 외 차량 추가 구매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신차	중고차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구분	총중량 3.5톤 이상 추가 구매 지원		지게차, 굴착기는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신차	중고차	
지원율	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차량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지게차, 굴착기는 신차(200%)만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 추가 구매 지원 조건 상세 >

구분		신차 및 중고차 지원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 신차*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중고*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구분		신차 및 중고차 지원기준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2.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DPF 부착가능차량(2006.02.01.)첨부자료]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2.11.1이후 신규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table>
<tr><th colspan="3"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상한액
(기본+추가지원)</th><th rowspan="2"></th><th colspan="3">지원율</th></tr>
<tr><th>5등급</th><th>4등급</th><th>기본</th><th colspan="2">추가지원</th></tr>
<tr><td rowspan="10">4·5등급
자동차</td><td rowspan="2">총중량
3.5톤 미만</td><td>승용(5인승 이하)</td><td>300</td><td>800</td><td>50%</td><td>50%</td><td rowspan="2">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td></tr>
<tr><td>그 외</td><td>300</td><td>800</td><td>70%</td><td>30%</td></tr>
<tr><td rowspan="4">총중량
3.5톤 이상</td><td>3,500cc 이하</td><td>440</td><td>720</td><td rowspan="5">100%</td><td colspan="2" rowspan="5">200%(신차)
100%(중고차)</td></tr>
<tr><td>3,500cc 초과
5,500cc 이하</td><td>750</td><td>1,600</td></tr>
<tr><td>5,500cc 초과
7,500cc 이하</td><td>1,100</td><td>2,400</td></tr>
<tr><td>7,500cc 초과</td><td>3,000</td><td>7,800</td></tr>
<tr><td colspan="2">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td><td>4,000</td><td>10,000</td></tr>
</table>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5)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6)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시 추가 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 되어야 인정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 지게차 폐기 후 굴착기 구매 및 굴착기 폐기 후 지게차 구매시 추가지원 불가

5 보조금 산정기준

○ 신청서 접수기준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기준가액표에 '06까지 산정되었다면, '05년 차량가액은 '06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 적용산정

○ 20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보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에 한해 보조금 지급(수출, 차령초과말소 제외)

○ **보조금 지급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산정**

6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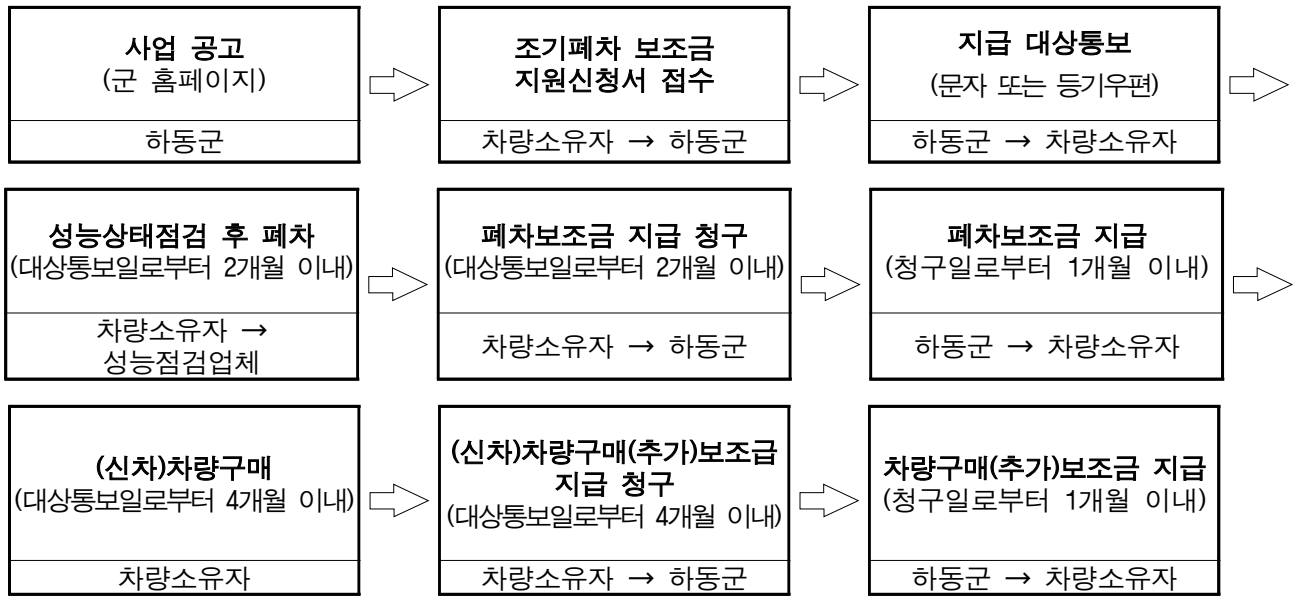

※ 폐차하기 이전에 반드시 성능상태점검 받아야 함

※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의 소유자 등은 폐차업소로 이동하기 전 주기장 등에서 원동기 등 시운전을 통한 가동상태를 확인받고 폐차업소로 이동하여야 함(다만, 폐차업소 내에서 소유자 등이 시운전이 가능한 경우는 폐차업소로 이동 후 확인받을 수 있음)

☆신청서 접수 등 절차 안내 ☆

접수물량 미달 시에는 별도 추가 공고없이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상시접수합니다.

1. 신청서 접수 ※ 선착순 접수가 아니니, 접수기간 내에만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 접수기간 : 2023. 2. 22.(수) ~ 예산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군청방문 중 택 1** 신청

인터넷	○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 590. 5023, 5028)**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붙임4 참조] ○ 추가 구비서류는 보조금 청구서 신청시 제출
등기우편	○ **등기우편 주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조기폐차 담당자 (☎055-880-2564~7) ○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자 외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⑤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군청방문	○ **방문(하동군청 환경보호과) 주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별관 1층(☎055-880-2564~7) ○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 군청 비치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자 외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⑤ 해당자 :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2.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 (추가지원금) 100만원(기본지원금 상한액 한도)

○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 (신청방법) 사업지원 신청서,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첨부

○ (첨부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은 조기폐차 신청일(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발급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문의전화 ☎국번없이 1357

3.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통보일자 : 2023. 3. 10.(금)

※ 문자 알림(필요 시 등기우편 발송)

○ 조기폐차 대상자 : 지원금액 등 명시하여 알림

○ 조기폐차 제외자 : 제외사유를 명시하여 알림

4. 조기폐차용 차량성능 · 상태 검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검사**하여야 함

○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검사 후 검사업체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또는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 기록부” 발급

※ 조기폐차용 차량성능·상태 검사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임

○ 관내 검사업체

연번	성능·상태점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1	현대종합자동차정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334	882 6600
2	1급두일정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126	882 2500
3	이화모터스	하동군 적량면 황금길 3	882 0521
4	하동자동차정비	하동군 적량면 대티길 66	884 2121
5	대광자동차1급정비	하동군 진교면 새미골길 32-2	883 9173
6	신라종합정비	하동군 고전면 재첩길 20	882-8289

5. 대상차량 폐차(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조기폐차용 차량성능·상태검사에서 정상가동 판정 이후 차량을 폐차(**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1호**)하여야 함

※ 수출, 멸실, 환가(차령초과 등의 말소등록 차량과 대상자 통보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불가

* 선정된 차량에 저당,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제 후 폐차(자진말소)하여야 보조금 지급 가능

○ 관내 폐차업체

연번	폐차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1	하남폐차장	하동군 진교면 경충로 598	884 0506

6.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소급불가)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②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1부

③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④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⑤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7. [신차]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2022년 11월 1일 이후 신차등록까지 가능)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

① (신차)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② 신차 자동차등록증 1부(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③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 단, 신차출고 지연 등 청구 기간 내 청구 불가 시 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하여 연장 가능

④ **폐차 및 신차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8. 보조금 지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 (신차)차량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익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9. 유의사항 등 기타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23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 및 하동군 유권해석에 의함

○ **신차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군 전출 및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지원 불가**

○ 상속이전 시에는 하동군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예외 적용 가능함

○ 보조금 청구 시 소유자 통장(계좌)은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함

○ 조기폐차 상담문의 : 하동군 환경보호과 ☎ 055-880-2564~7

붙임 1. 조기폐차신청서(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위임장
4. 조기폐차 인터넷 신청방법
5.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6.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7. (신차)차량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
8.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9. 포기서

[붙임1]

조기폐차 신청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소유자	①성명(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FAX :		

⑤신차구매여부(추가지원금 관련)	⑥상한액 대상자
□ 구매 □ 미구매	□ 휘발유 □ 전기 □ LPG □ 수소 □ 하이브리드 ※ 경유차 제외	□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 영업용

대 상 자동차	⑦자동차번호			
	아래 ⑧~⑭은 담당공무원이 제출서류 확인 후 직접 기입			
	⑧등록일자	년 월 일	⑨차종	
	⑩용도		⑪차명	
	⑫형식		⑬연식	
	⑭차대번호		⑮원동기형식	
	⑯자동차제원	배기량( )CC 승차정원( )명 연료(경유) 총중량( )kg 최대적재량( )kg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법인일 경우 법인 직인 또는 인감 날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수수료
	1.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3.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1. 4·5등급 차량 2. 6개월 이상 등록 3.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 4. 폐차대상차량의 정부지원을 통한 저공해조치이력여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 · 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 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 · 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등 차량제원, 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성명) (서명, 날인)

○ 하동군수 귀중

[붙임3]

위 임 장

수 임 자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주민등록번호	
대상차량정보 (조기폐차차량)	자동차번호	

상기 위임자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1.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수임자 신분증 사본 1부.

년 월 일

위임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대상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일괄 갈음

[붙임4]

■ 조기폐차(저공해조치) 회원가입 방법

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 조기폐차(저공해조치)인터넷 신청방법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 저공해신청 클릭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을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붙임5]

확인번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록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 □ 건설기계	□연식( )년 □배기량( )CC		
		□차량명(건설기계명) :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확인항목				확인결과	
	동일성 확인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원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조 향	- 좌·우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제 동	- 제동 가능 여부			□ 가 능 □ 불 량
	유압장치 (건설기계)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소음)
	그외 주요 부품	- 차제 외관 상태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찌그러짐)
		- 완충장치 상태(차량)			□ 양 호 □ 불 량
		- 유리창 파손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일부파손)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일부 깨짐)
	첨부물	사진 4매(전・후・좌・우면), ※ 온라인 이용시 동영상 첨부			

판정결과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불가 사유		종합의견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절차대행자 (인)

[붙임6]

<table>
<tr><td>확인번호</td><td colspan="5">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td></tr>
<tr><td rowspan="3">소유자</td><td>성명(법인명)</td><td></td><td>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 colspan="4"></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4">FAX :</td></tr>
<tr><td rowspan="6">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td><td>자동차번호</td><td></td><td>차대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 자동차
□ 건설기계</td><td colspan="4">□연식( )년 □ 배기량( )CC</td></tr>
<tr><td colspan="2">정원(승합) : 명</td><td colspan="2">규격(건설기계) :</td></tr>
<tr><td colspan="4">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td></tr>
<tr><td>등록일자(차령)</td><td colspan="4">년 월 일 (년 월)</td></tr>
<tr><td>주행거리</td><td></td><td>사용연료</td><td colspan="2"></td></tr>
<tr><td>보조금신청금액</td><td colspan="4">원 (₩)</td></tr>
<tr><td>폐차</td><td>말소 일자</td><td></td><td>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폐차 후
신차구매</td><td rowspan="4">자동차(건설기계)
제원</td><td colspan="4">□연식( )년 □ 배기량( )CC</td></tr>
<tr><td colspan="4">□차량명(건설기계명) :</td></tr>
<tr><td colspan="4">정원(승합) : 명</td></tr>
<tr><td colspan="4">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td></tr>
<tr><td>등록일자(예정)</td><td colspan="4">년 월 일 (년 월)</td></tr>
</table>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법인일 경우 직인 또는 인감날인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등록증(사본)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원본) 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원본)
3. 자동차 소유자의 통장사본(법인은 법인통장사본)

[붙임7]

<table>
<tr><td>확인번호
</td><td colspan="6">(신차)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td></tr>
<tr><td rowspan="3">소유자</td><td>성명(법인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 colspan="5"></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d>폐차차량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td><td>신규차량번호</td><td colspan="2"></td><td>차대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자동차제원</td><td colspan="5">□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td></tr>
<tr><td colspan="5">□차명 : □ 정원(승합) : 명</td></tr>
<tr><td colspan="5">□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td></tr>
<tr><td>등록일자</td><td colspan="3">년 월 일</td><td>사용연료</td><td></td></tr>
<tr><td>추가보조금
신청금액</td><td>□신차</td><td>□중고차</td><td colspan="3">원 (₩)</td></tr>
<tr><td>폐차
관련</td><td>말소 일자</td><td colspan="2"></td><td>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7">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법인일 경우 직인 또는 인감날인

하동군수 귀하</td></tr>
<tr><td colspan="7">※ 첨부서류
1. 신차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사본)
2. 폐차 자동차 말소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등록증(사본)
3. 자동차 소유자의 통장사본(법인은 법인통장사본)</td></tr>
</table>

[붙임8]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하동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하동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하동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성명 (서명)

[붙임9]

포 기 서

① 사 업 명		2023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 청 인 (대표자)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⑤ 연락처			
신 청 내 용	⑥ 차 량	차 명		
		등록번호		
	⑦ 포기사유	□ 저공해조치방법(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변경 □ 조기폐차 연기 □ 기타( )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기 신청한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23 - 292호

공 고

하동군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4.

하 동 군 수

1. 등록 및 폐기일 : 2023. 2. 24.
2. 등록 및 폐기사유 : 자동인증기 교체
3. 등록 및 폐기공인

구분	공 인 명	글씨체 및 규격	인영	비고
등록	민원사무전용 악양면장인(인증기)	한글전서체 2.1㎝ 정사각형		
폐기	민원사무전용 악양면장인(인증기)	한글전서체 2.3㎝ 정사각형		

하동군 공고 제2023-294호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공고 제2023–12호]

(긴급)「2023하동세계차엑스포」 티푸드관(주음식관) 운영사업자 선정 변경공고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최상의 먹거리와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티푸드관(주음식관)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 행 사 개 요 >

- 행 사 명 : 2023 하동세계차(茶)엑스포
- 행사기간 : 2023. 5. 4.(목) ~ 6. 3.(토)/31일간
- 행사장소 : 제1행사장(하동스포크파크 일원), 제2행사장(하동야생차박물관 일원)
- 주최/주관 : 경상남도·하동군/(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 주 제 : 자연의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티푸드관(주음식관) 운영사업자 선정 변경공고

○ 대상시설

구 분	판 매 음 식	면 적	수량	구 조	위 치
티푸드관 (주음식관)	한식, 양식, 중식, 분식 등 (한식 필수)	1800㎡ (30m*60m)*	1	ALU-HALL	제1행사장

* 조리공간 별도(MQ텐트, 5m*5m, 12개)

※ 참고사항

- 공고내용은 조직위원회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메뉴, 가격 등 조직위원회와 반드시 협의 후 결정
- 식당 이름 및 간판은 추후 조직위에서 정하는 대로 함
- **5. 4.(목) 개막식 전 음식관에서 내외빈 환영만찬 예정(15시~18시예정)으로 일반관람객 대상 음식관 운영이 제한될 수 있음 ※ 사용면적, 시간 등은 추후 조직위와 협의**

○ 공모방법 : 일반경쟁입찰(지역제한 없음)

○ 임대방법 : 1개업체 **일괄임대**

- 전체 임대장소 일괄입찰이며, 매장별 분리입찰은 불가

○ 임대기간 : 2023. 5. 4. ~ 6. 3.(31일간)

※ 주음식관 운영기간만을 임대기간으로 하며, 시설 설치 등을 위한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과업내용 : 붙임 '임대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참조

○ 임 대 료 : (기초금액) 75,000,000원 / 기초금액이상 최고가낙찰

- 기초금액 이상으로 제출, 기초금액 미만으로 제시할 경우 자동으로 부적격 처리
-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함
- 엑스포조직위원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부가세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안 됨

○ 입찰서 제출처 :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 입찰일정

인터넷 입찰 (온비드)				비 고
공고일자	입찰기간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3. 2. 23.(목)	'23. 2. 24.(금)10:00 ~ 3. 2.(목)16:00	'23. 3. 3.(금) 10:00	엑스포조직위원회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회는 미개최

2. 입찰참가자격

※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자격을 제한받지 않고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

- 공고일 현재 당해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및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을 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위탁급식 영업신고가 되어있는 자 중 2년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 **한식(필수), 양식 등 2가지 종류 이상 요리류 판매가 가능한 자**

○ 공고일 현재 해당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영업신고를 득하여 2년 이상 운영 중인 자로서,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 5억 원 이상이거나 엑스포·축제 등 행사 푸드코트 매출액 3억 원 이상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집단급식관련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3. 참가조건

○ 영업준비 완료일 : 2023. 4. 27.(목)까지 * 개최 7일전

※ 시식회 개최(개최 10일 전 정도)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판매제한 품목 : 주류, 패스트푸드 등

※ 메뉴, 가격 등은 조직위원회와 협의 후 확정

○ 영업 준비사항

구 분	세 부 사 항
조 직 위원회	■ 주음식관 임시 건물 제공 ■ 테이블, 의자 제공(제공 개수 이상 추가분은 운영사업자 부담) ■ 에어컨, 환풍기 설치 ■ 전기, 통신, 급·배수시설의 영업시설의 인입부까지 설치 ■ 회장 내 공용 와이파이 제공 ■ 주음식관 총괄 운영 및 위생관리·감독 ■ 전기·통신 및 상·하수도요금 납부
운 영 사업자	■ 임대료 납부 ■ 내부 인테리어 등 내부시설 일체 ■ 가스 간선 공사, LPG 가스통 구비 등 가스관련사항 일체 ■ 종사자 위생복 등(디자인 등 조직위원회와 협의 후 확정) ■ 주방, 홀 청소, 정리 운영 등 인력 고용 및 운영 ■ 푸드코트 시스템 구축, POS·키오스크 등 결제시스템 및 카드단말기 설치 ■ 주방용 소모품(집기류 등), 식재료 구입 등 ■ 영업신고 등 제반 행정 사항 처리 ■ 화재보험 및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의무적 가입 ■ 식기세척 및 관리, 홀 청소·정리 및 운영 관리 등 ■ 정수기, 살균기 등 운영 및 관리 ■ 음식물 쓰레기 등 일반쓰레기 처리비용 ■ 기타 음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운영 목적을 위한 기타 운영경비 일체)

※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제비용(매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사업자 부담 원칙

4. 입찰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 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온비드" 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여부는 "온비드" 화면에서 입찰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납부방법 : 현금납부**

- 현금납부 :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
-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 등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 따라 낙찰을 무효로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조직위원회에 귀속

※ 임대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시 보증금은 참가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환급되며, 이자 등 보증금과 관련된 일체의 별도 요구를 할 수 없음

○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낙찰자의 임대차 계약 시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됩니다.

6.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3. 3. 3.(금) 10:00, 엑스포조직위원회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최고가로 입찰을 하였더라도 무효 처리하고 다음 순위 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 및 조직위원회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입찰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된 입찰

○ 입찰참가자격 미달자의 입찰

○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상으로 입찰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9. 보증금 등의 처리

○ 낙찰자 결정 후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 서비스 및 외부 연계 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오류 및 은행대사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 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10. 낙찰자의 계약체결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은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조직위원회에 귀속됩니다.

○ 임대료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낙찰을 무효화하고 다음 순위 낙찰자에게 승계됩니다.

○ 계약체결장소 :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원탑1길 6 (구. 화개면사무소)

11. 사용료(임대료) 납부 방법

○ 임대료 납부의무자 : 낙찰자

○ 임대료 납부방법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시완납(지정계좌 또는 고지서)

12. 낙찰시 제출서류 * 계약체결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리인 참석 :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원본지참)

○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

※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지참

○ 입찰참가 자격 입증서류 1부(해당사항에 맞춰 제출)

- 영업허가(신고)증
- 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기타 실적 증빙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원(세무서 발행)

※ 입증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보건증, 영업배상책임보험 각 1부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 운영계획서 1부

- 주음식관 안전·보건(위생)관리 계획
- 운영계획(판매품목 및 가격 포함) : 한식(필수), 양식 등 2가지 이상 요리류
- 내부 인테리어 구성계획(조직위원회와 협의 후 확정)

※ 제출서류는 공증된 기관에서 발급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13. 낙찰자의 낙찰 후속 절차 이행(사업자등록 및 손해보험 가입 등)

○ 낙찰자는 당해 사업 영위를 위하여 낙찰자 명의로 인·허가 등을 필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관할 행정청의 영업신고증을 발급 후 지체없이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에 명시된 낙찰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영업신고,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완료 증서(원본지참)를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엑스포 개장일 2023년 5월 4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임대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계약서 작성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금품·향응 제공자는 조직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조직위원회와 협의 후 진행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기재내용은 정확한 근거와 사실에 의거 작성되어야 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과 공고내용 및 현장여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최소 개최 7일 전까지 인테리어 등을 마치고 개최일에 맞춰 운영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 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 사본을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음식의 품질과 양이 메뉴운영계획과 다를 경우 또는 <영업시설 위반사항 처분 기준>(붙임)에 위반된 경우, 패널티 부여 및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조직위원회가 입점사업자에게 임대한 시설은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전매·양도 또는 담보 제공이 불가함.

○ 영업시간은 조직위에서 정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영업시간 내 임의로 운영을 중단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에는 조직위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함. * 무단 휴폐업 시에는 그로 인한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음

○ 입점사업자는 조직위원회와 협상과정에서 결정된 운영인력을 반드시 확보하고 식음시설

을 운영하여야 함.

- ○ 영업장 내 근무자 복장은 통일하여야 함.(복장은 조직위와 협의 후 확정)
- ○ 영업시설 내·외부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테이블 및 바닥 청소를 위한 인력을 운영하여야 함.
- ○ 티푸드관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일반, 음식물 포함)는 지정된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 ○ 매출에 따른 카드수수료 등의 각종 부과금 납부와 가스요금,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오수처리비용, 음식물·일반쓰레기)은 운영사업자 부담 사항입니다.
- ○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에 따른 관람객 수 감소나 영업시설 운영 미비에 따른 매출 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 제기가 불가함.
- ○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에 따른 행사 연기 또는 취소 시 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조직위원회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 ○ 영업 품목과 판매금액은 시중가격에 준하여 조직위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함.
- ○ 운영사업자는 조직위와 협상 과정에서 결정된 메뉴 및 품목만 판매하여야 하며, 조직위의 허가 없이 특정품목의 판매중단 또는 유사품목으로 변경할 수 없음
- ○ 재료의 원산지를 메뉴판에 표시하여 소비자가 볼 수 있게 제작 설치하여야 함.
- ○ 매출액은 POS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조직위에 일일 매출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 운영사업자는 식품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식중독의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검사에 응해야 함.
- ○ 운영사업자는 조직위원회의 정기·수시 위생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합니다.
- ○ 식재료의 구매 및 확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조직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 상기내용은 조직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6. 기타 문의사항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조직위원회의 해석에 따릅니다.
- ▸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그 외 공고에 관한 사항은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055-880-70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등은 붙임의 '임대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참조

붙 임 : 주음식관 임대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1부.

2023년 2월 23일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장

붙임1 **배 치 도**

❍ **제1행사장**(경남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07 일원, 하동스포츠파크)

구 분	개 수
T-FOOD	1개소
푸드트럭	1개소(7대)
편의점·카페	3개소

❍ **제2행사장**(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71-25 일원,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

구 분	개 수
편의점	1개소

※ 위치는 행사장 내에서 소폭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2 영업시설 위반사항 처분기준

번호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경우	계약해지	-	-
2	영업시설을 전대,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계약해지	-	-
3	예정된 일자에 영업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	-
4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계약해지	-	-
5	법규위반제품(유통기한 경과, 관련법규 미준수 제품 등) 판매	위반물품 회수	계약해지	-
6	조직위 승인 없이 판매물품 및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시정경고	계약해지	-
7	조직위 승인 없이 영업을 휴업하거나 단축·연장한 경우	시정경고	계약해지	-
8	영업 상황 확인 등을 위하여 영업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9	식재료 원산지 표시 미이행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10	부정한 방법에 의한 판매물품 등의 반·출입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11	지정된 영업시설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시정경고	계약해지	-
12	조직위 행정지도사항 미이행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13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14	영업자의 호객 행위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15	광고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시정경고	강제회수	계약해지
16	기타 법령 및 제규정, 지침, 지시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붙임3 임대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2023 하동세계차(茶)엑스포 티푸드관(주음식관) 【임대계약 일반조건】

제1조(임대목적)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주음식관 운영“에 한한다.

제2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엑스포 개최일로부터 31일간으로 한다.

제3조(임대료)

임대료는 입찰에 따른 낙찰금액(부가세 미포함)으로 한다.

제4조(임대료 납부)

①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납부계좌로 계약체결 후 지정 기한내(7일 이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 = 0.13% × 지체일수 × 총기준금액(임대료)

제5조(임대료의 반환)

납부한 임대료는 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임대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임대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임대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임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때
2. 임대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임대계약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임대하는 경우

제6조(임대계약 재산의 집기보존 및 연고권 배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임대계약 재산 및 집기의 임대,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임대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임대계약 재산의 부과금 및 공공요금)

임대계약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조직위원회에서 산출한 기준에 의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 임대 사업장 부과금이 별도 분리산출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임대료에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음, 그 외 인터넷, 추가 전기요금, 가스비 등 일체의 부과금과 공공요금은 임차인 별도 부담

제8조(임차인의 행위제한)

임차인은 조직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임대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임대계약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임대계약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임대계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언제든지 계약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경우
2. 계약 재산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계약조건에 위배한 경우
3. 임대계약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본 엑스포 운영 및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조직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영업을 하지 않아 관람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제10조(임대계약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본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조직위원회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임대계약 취소 요청)

임차인은 계약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임대계약 취소원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임차인이 결정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초과 임대일수에 대한 임대료는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

제12조(임대재산의 반환의무)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직원의 입회하에 해당 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목적의 성질상 임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 원상의 변경에 대한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불이행시 임대료 징수)

임차인은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직위원회는 임대료를 계속 징수하며 조직위원회가 원상복구를 원할 때에는 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

임차인은 계약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한 경우 또는 계약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조직위원회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 (비품 등의 도난 시 책임)

재산에 비치되어 있는 비품 등의 물품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도난 등 각종 사고에 대해서 조직위원회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임대계약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임차인은 본 계약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조직위원회가 필요한 지시 또는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의 가격 등)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이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민원해결 노력)

임차인은 “주음식관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청결 및 위생관리 강화
2. 종사원 건강검진 실시
3. 음용수 제공 등 이용편의 서비스 제공
4. 엑스포가 국제행사인 점을 감안하여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사익보다는 이용자를 위한 공공서비스 향상에 노력
5. 이용자의 정당한 요구사항 수용

제19조(사업자 등록 및 영업계약)

낙찰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영업개시일로부터 임대계약만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자등록 및 영업계약(신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용어 및 어구의 해석)

본 계약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준용규정)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수익계약 특수조건에 의한다.

2023하동세계차(茶)엑스포 티푸드관(주음식관) 【임대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티푸드관(주음식관) 운영 (이하 “주음식관 운영”)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대부 임대계약를 받은 자가 임대계약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설치 및 비품관리)

주음식관의 시설설치 및 비품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임차인의 “주음식관 운영” 은 조직위원회가 임대수익 계약한 공간에 한정한다.

② 계약된 이외의 다른 종류의 시설물 설치나 물품을 일체 적치할 수 없다.

③ 조직위원회가 제공하는 내부 인테리어 설비 이외에 필요한 모든 기기 및 설비의 설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3조(영업시간 및 영업일)

임차인은 엑스포의 개방시간(10:00 ~ 18:00) 내에 영업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업일은 엑스포 운영 31일간(2023. 5. 4. ~ 6. 3.)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음식의 판매)

① 임차인이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한식, 양식 등 요리류로 임차인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조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운영사업자는 조직위원회와의 협상 과정에서 결정된 메뉴 및 품목만 판매하여야 하며, 조직위원회의 계약(협의)없이 특정품목의 판매중단 또는 유사품목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유사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은 조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식재료의 구입은 응찰 시 제출한 제안서 및 협상에 따라 계약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단 조직위원회의 계약(협의)를 받을 경우는 변경 가능하다.

④ 식음료는 식품위생관련 법규에 의거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취급 품목 및 판매 가격표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 구입 시 지역 농특산물 활용하여야 한다.

⑥ 모든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직위원회에서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영업개시 전(개최 10일전 정도) 시식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식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음식의 맛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 및 청결 문제)

① 임차인은 항상 이용자의 보건을 위하여 주음식관의 청소를 실시하고 집기 등을 수시로 살균 소독하여야 하며, 주음식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일반쓰레기 포함)는 임차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사업자는 조직위원회의 정기, 수시 위생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구매 및 확보에 관한 관련 자료는 성실히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할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사업자는 화재보험 및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 후 7일이내** 증서를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이 판매 제공하는 취급품목으로 인한 민원 및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보상 의무를 진다.

제6조(매출액의 관리)

① 조직위원회와 운영사업자 간 실시간으로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판매시점 통합관리시스템(POS)을 통해 매출액을 관리한다.

※ 카드결제기는 의무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결제수단별 금액을 달리 할 수 없다.

② 매출액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관련 자료는 성실히 기록, 보관하며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할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엑스포 관람객 수 및 식당 운영에 따른 매출액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공공요금등의 부담)

임차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반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추가 전기는 별도 신청 임대량에 따른 납부금액으로 한다.
② 상기사항 이외의 기타 유지비용은 임차인이 별도 부담한다.

제8조(시설의 운영)
① 조직위원회가 운영사업자에게 위탁한 시설은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그 권리를 전대, 양도, 하도급 할 수 없다.
② 운영사업자는 조직위원회와의 협상과정에서 결정된 운영인력을 반드시 확보하고 주음식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주음식관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하동군 폐기물관리 조례』 등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시간에 엑스포 임시폐기물 처리 지정장소로 배출하여야 한다.
④ 조직위원회가 위탁한 일체 시설을 운영사업자가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임대시설 운영 관련 피해보상 및 화재, 분실, 사고 등에 대한 보험은 운영사업자 부담으로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도난 및 손괴방지)
임차인은 주음식관 내의 시설과 물품을 보호관리 하여야 하며, 도난 및 손괴 등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모두 책임을 진다.

제10조(공익적 운영)
임차인은 주음식관이 관람객의 휴식공간으로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조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공익적 활동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주음식관 운영” 에 필요한 인력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2조(계약조건 등 불이행에 대한 제재)

임차인이 계약조건의 취소에 해당하는 행위 이외의 계약 조건 위반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시설 위반사항 처분기준'** 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임대계약 표찰의 부착)

임차인은 공유재산 임대목적, 임대기간, 임차인 성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4조(임대계약 사항)

임차인은 합리적인 영업행위를 위하여 영업 개시일 이전에 "주음식관 운영" 업무에 필요한 임대계약(식품영업신고 등)을 받아야 하며, 관련 서류를 조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운영사업자는 그 밖에 조직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사업자가 상기의 내용을 위반할 시 조직위원회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③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해석을 따른다.

④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이나 초상권을 임대한 때에는 그 권리의 임대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저작물 임대 대금 등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 포함)은 운영사업자에게 있다.

⑤ 엑스포가 조직위원회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주음식관 운영" 준비로 인하여 운영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배상하여야 하나, 운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조직위원회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붙 임 1. 시설배치도 1부
2. 영업시설 위반사항 처분기준 1부.
3. 운영계획서 등 서식 각 1부

붙임1 **배 치 도**

❍ **제1행사장**(경남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07 일원, 하동스포츠파크)

❍ **제2행사장**(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71-25 일원,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

※ 위치는 행사장 내에서 소폭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음식관 외부 조감도】

【주음식관 내 배치도】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2 영업시설 위반사항 처분기준

번호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경우	계약해지	-	-
2	영업시설을 전대,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계약해지	-	-
3	예정된 일자에 영업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	-
4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계약해지	-	-
5	법규위반제품(유통기한 경과, 관련법규 미준수 제품 등) 판매	위반물품 회수	계약해지	-
6	조직위 승인 없이 판매물품 및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시정경고	계약해지	-
7	조직위 승인 없이 영업을 휴업하거나 단축·연장한 경우	시정경고	계약해지	-
8	영업 상황 확인 등을 위하여 영업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9	식재료 원산지 표시 미이행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10	부정한 방법에 의한 판매물품 등의 반·출입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11	지정된 영업시설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시정경고	계약해지	-
12	조직위 행정지도사항 미이행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13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14	영업자의 호객 행위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15	광고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시정경고	강제회수	계약해지
16	기타 법령 및 제규정, 지침, 지시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붙임3 **운영계획서 등 서식**

티푸드관(주음식관) 운영계획서

*** 엑스포 품격에 맞는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작성**

1. 메뉴(식단) 운영 계획

○ 취급 메뉴 및 가격

- 종 류 : 한식, 중식, 양식, 분식 등 2종류 이상
- 메뉴 수 : 각 3 ~ 5개(종류별 8천원 메뉴 2개이상 포함)
- 녹차를 활용한 음식 포함(총2개이상)
- 외국인 참여자,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메뉴 포함
- 메뉴별 음식사진 첨부

종류별	품 명(메뉴)	조리가능 수량 (인분/조리시간)	판매금액(원)	비 고
한식				
중식				
…				
…				

○ 일별 제공반찬 메뉴(재료의 원산지 표기)

○ 식재료의 구성(원산지 표기)

○ 지역 특산물 구입 활용 방안

○ 판매 음식의 회전률

2. 집기류 및 시설설치계획

○ 조리기구, 주방설비 및 집기류 등 구비계획

- 집기 및 비품 구축내역 등

○ 주방 및 홀 배치 구성계획(내부 계획 도면 제출)
○ 내·외 광고물 설치 및 인테리어 계획
○ 음식관 내 냄새 발생 최소화(제거) 계획
○ 외국인 관람객 편의제공 시설설비계획 등

3. 효율적인 계산(매표) 및 배식 계획

○ 푸드코트 시스템 구축방안
○ 결제시스템(POS) 및 키오스크 운영계획
○ 대기행렬 최소화 및 질서유지 방안
○ 음식 제공에 소요되는 시간

4. 인력운영계획

○ 조리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배치 인원(관련증빙 첨부)
○ 종사자 배치 인원, 장소 및 임무
○ 업무분장표 / 결원 시 인력충원 계획
○ 직원 교육계획
○ 직원 복장 통일 계획

5. 위생관리 및 안전사고 대비계획

○ 위생 및 안전관리 대책(식중독 예방 등)
○ 영업장 청결유지 계획(조리실, 홀, 테이블 등)

6. 민원처리방안

○ 민원 대응 및 조치계획(민원처리일지 / 일일점검표 등)
○ 불만사항 응대 및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 서비스 질 향상 향상 계획

7. 기타 제안사항

○

○

2023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직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상남도 및 하동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이를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의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하동세계차엑스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와 관련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 약 자(업체명/대표자) : (인)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귀하

사 용 인 감 계

법인 인감	사용 인감

2023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식음시설 운영사업자 모집**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3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귀하

위 임 장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식음시설 운영사업자 모집 공모에 따른 제안서 제출에 있어서 아래 사람을 위임자로 지정하고 위임장을 제출하며, 위임받는 자의 설명 및 답변 등 일체의 행위는 당사를 대표한 행위로 인정하며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위임자가 책임을 집니다.

업 체 명	위 임 받 는 자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2023년 월 일

위임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귀하

당해 · 유임대역 수행실적

○ **업 체 명 :**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건수	발주처·부서명 (전화번호)	비 고
계	-	-			-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 받은 당해·유임대역 수행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당해·유임대역만 인정하되,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실적으로 인정

3. 첨부서류 :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기타 실적증빙 자료

실 적 증 명 서

<table>
<tr><td rowspan="4">신청인</td><td>업체명</td><td colspan="2"></td><td>대표자</td><td></td></tr>
<tr><td>영업소재지</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사업자번호</td><td colspan="2"></td><td>제출처</td><td>하동세계차
엑스포조직위원회</td></tr>
<tr><td>증명서용도</td><td colspan="4">2023하동세계차엑스포 티푸드관 운영 사업자 공모</td></tr>
<tr><td rowspan="5">용역이행
실적내용</td><td>용 역 명</td><td colspan="4"></td></tr>
<tr><td>총 용역금액(원)</td><td colspan="3">₩</td><td>진도 : %</td></tr>
<tr><td rowspan="2">계약번호</td><td rowspan="2">계약일자</td><td rowspan="2">사업기간</td><td colspan="2">이행실적</td><td rowspan="2">비고</td></tr>
<tr><td>비율(%)</td><td>실적(원)</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용역개요</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증 명 서
발급기관</td><td colspan="5">위 사실을 증명함
2023년 월 일
기관명 : (인)</td></tr>
<tr><td colspan="5">발급부서 :</td></tr>
<tr><td colspan="3">전화번호 :</td><td colspan="2">담당자 : (인)</td></tr>
</table>

※ 용역개요는 과업지시서 요약 분을 명기하여야 합니다.(별도 요약분 첨부 가능함)

※ 타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실적 관련 주요항목은 투명테이프를 부착할 것

하동군 공고 제2023-294호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공고 제2023-13호]

(긴급)「2023하동세계차엑스포」 푸드트럭 운영사업자 선정 변경공고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해 푸드트럭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 행 사 개 요 >

- 행 사 명 : 2023 하동세계차(茶)엑스포
- 행사기간 : 2023. 5. 4.(목) ~ 6. 3.(토)/31일간
- 행사장소 : 제1행사장(하동스포크파크 일원), 제2행사장(하동야생차박물관 일원)
- 주최/주관 : 경상남도·하동군/(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 주 제 : 자연의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푸드트럭 운영사업자 선정 변경공고

○ 대상시설

구 분	개소수	형 태	영 업 종 목	위 치
푸드트럭	7대	1톤트럭	닭꼬치, 떡볶이 등 즉석조리식품	제1행사장

※ 운영부지만 제공

○ 공모방법 : 일반경쟁입찰(지역제한 없음)

○ 임대방법 : 일괄임대

- 전체 임대장소 입괄입찰, 매장별 분리입찰 불가

○ 임대기간 : 2023. 5. 4. ~ 6. 3.(31일간)

○ 임 대 료 : (기초금액) 26,000,000원 / 기초금액이상 최고가낙찰제

- 기초금액 이상으로 제출, 기초금액 미만으로 제시할 경우 자동으로 부적격 처리

-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함
- 엑스포조직위원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부가세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안 됨

○ 입찰서 제출처 :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 입찰일정

인터넷 입찰 (온비드)				비 고
공고일자	입찰기간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3. 2. 23.(목)	'23. 2. 24.(금)10:00 ~ 3. 2.(목)16:00	'23. 3. 3.(금) 10:00	엑스포조직위원회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회는 미개최

2. 입찰참가자격

※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현재 푸드트럭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관련 법령에 의해 영업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푸드트럭을 합법적으로 7대 운영 가능한 단체 또는 법인**

○ 다수의 푸드트럭 업체로 구성된 단체 또는 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자 및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고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자 중

- 공고일 현재 당해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및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을 한 업체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한 영업허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입찰참가 방법 및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이며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 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시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 2023. 3. 3.(금) 10:00, 엑스포조직위원회 입찰집행관 PC**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최고가로 입찰을 하였더라도 무효 처리하고, 다음 순위 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다음 순위 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해당,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 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거나 소정기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미달일 경우에는 낙찰 무효처리 후 입찰보증금은 조직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환불은 입찰 등록 시 제출된 환불계좌로 환불처리됩니다.

※ 임대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시 보증금은 참가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환급되며 이자 등 보증금과 관련된 일체의 별도 요구를 할 수 없음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은 무효처리되고 입찰보증금은 조직위원회로 귀속되며, 부정당한(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은 본인책임입니다.

7. 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 임대료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일시납부하여야 합니다.

○ 조직위는 단체 또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며, 소속 영업자는 모두 합법 푸드트럭을 보유하여야 하고 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 계약체결 장소 :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원탑1길 6 (구. 화개면사무소)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 푸드트럭 차량등록증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완납증명서 1부.
- 기타 : 운영계획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각 1부.

※ 제출서류는 공증된 기관에서 발급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8. 낙찰자의 낙찰 후속 절차 이행

○ 낙찰자는 당해 사업 영위를 위하여 낙찰자 명의로 인·허가 등을 필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관할 행정청의 영업신고증을 발급 후 지체없이 엑스포조직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엑스포 개장일인 **2023년 5월 4일**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임대시설 운영 관련 피해보상, 분실,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은 운영사업자 부담으로 의무 가입하여야 합니다.(※보험가입 증서 제출)

9. 제공시설

○ 운영시간 : 2023. 5. 4. ~ 6. 3.(31일간) 10:00 ~ 18:00

○ 영업준비 및 운영사항 : 조직위 제공이외는 모두 **운영사업자**가 준비

〈조직위원회〉

- 전기 기본용량 : 3KW

※ 초과분은 지원 안 되므로 가스 등 개별적으로 준비하여 이용하여야 함

- 상수도 및 통신은 연결 안 됨.

<운영사업자>

- 전기 연결, 카드단말기 설치 등

※ 통신은 제공되지 않으며 행사장 내 WIFI가 가능하므로 무선결제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사용하여야 함.

- 음식물 및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 및 주변 정리정돈 등

10.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 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영업시설 위반사항 처분 기준>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붙임의 해당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는 허가받은 재산 내 영업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자동차관리 법령에서 정한 각종 인가·허가·신고·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엑스포 관람객 수 및 운영에 따른 매출액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시설 운영 관련 피해보상, 분실,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은 운영사업자 부담으로 의무 가입하여야 합니다.

○ 판매품목 및 가격은 조직위와 협의·승인을 통해 결정하며, 가격 표시 및 재료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주류 판매 불가**

○ 영업에 필요한 가스, 각종 용품 및 집기류는 낙찰자 부담이며, 트럭 내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 모든 식자재 및 물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제규정을 준수하는 정식 유통망을 통한 제품만 판매해야 하며, 행사 기간 중 하동군이 행하는 식품위생 점검·지도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혐오식품, 건강유해식품, 상표권 등 법규 위반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주 교육 및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를 영업준비 완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단정하고 청결한 유니폼과 위생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고,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임차받은 영업시설은 제3자에게 전매·양도 또는 담보제공 불가하며, 신용카드 결제기 의무설치하여야 하며, 결제수단별 결제금액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 상기내용은 엑스포조직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엑스포조직위원회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공고에 관한 사항은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055-880-70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3일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장

붙임1 **배 치 도**

❍ **제1행사장**(경남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07 일원, 하동스포츠파크)

구 분		개 수
	T-FOOD	1개소
	푸드트럭	1개소(7대)
	편의점·카페	3개소

❍ **제2행사장**(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71-25 일원,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

구 분		개 수
	편의점	1개소

※ 위치는 행사장 내에서 소폭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2 영업시설 위반사항 처분기준

번호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경우	계약해지	-	-
2	영업시설을 전대,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계약해지	-	-
3	예정된 일자에 영업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	-
4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계약해지	-	-
5	법규위반제품(유통기한 경과, 관련법규 미준수 제품 등) 판매	위반물품 회수	계약해지	-
6	조직위 승인 없이 판매물품 및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시정경고	계약해지	-
7	조직위 승인 없이 영업을 휴업하거나 단축·연장한 경우	시정경고	계약해지	-
8	영업 상황 확인 등을 위하여 영업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9	식재료 원산지 표시 미이행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10	부정한 방법에 의한 판매물품 등의 반·출입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11	지정된 영업시설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시정경고	계약해지	-
12	조직위 행정지도사항 미이행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13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14	영업자의 호객 행위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15	광고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시정경고	강제회수	계약해지
16	기타 법령 및 제규정, 지침, 지시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붙임3 운영계획서 등 관련서식

푸드트럭 운영계획서

※ 반드시 메뉴, 금액 등 운영관련 사항은 조직위와 협의 후 진행

1. 취급 품목 및 판매 계획

상 호	품 명(메뉴)	금 액	비 고(차량번호)
차량이름			

※ 판매금액은 시중 판매가 수준으로 조정

2. 시설설치 계획

○ 차량 및 메뉴 사진

상호(차량이름)	메 뉴 명	메뉴사진	비고

3. 인력 운영 계획

○ 배치인원

○ 복장 통일 계획

4. 위생 계획

○ 식품 안전 관리 대책 (식중독 예방 등)

○ 영업장 내 · 외부 청결 유지 계획

○ 위생 복장 착용 계획

○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포함) 처리 계획

5. 천재지변(태풍 등)에 대한 대비책

6. 기타 제안사항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귀하

위 임 장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식음시설 운영 사업자 선정에 따른 계약 및 서류 제출에 있어서 아래 사람을 위임자로 지정하고 위임장을 제출하며, 위임받는 자의 설명 및 답변 등 일체의 행위는 당사를 대표한 행위로 인정합니다.

업 체 명	위 임 받 는 자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20 년 월 일

위임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귀하

사 용 인 감 계

법인 인감	사용 인감

상기인은 2023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식음시설 운영사업자 모집**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귀하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투명한 회계 질서 확립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있어 당사는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향후 경상남도와 하동군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참가 자격을 제한 받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발주관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자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향후 경상남도와 하동군이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상기 1, 2항의 사실이 드러나 낙찰자 결정 취소나 계약 취소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23-294호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공고 제2023–14호]

(긴급)「2023하동세계차엑스포」 편의점 운영사업자 선정 변경공고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해 편의점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 행 사 개 요 >

- 행 사 명 : 2023 하동세계차(茶)엑스포
- 행사기간 : 2023. 5. 4.(목) ~ 6. 3.(토)/31일간
- 행사장소 : 제1행사장(하동스포크파크 일원), 제2행사장(하동야생차박물관 일원)
- 주최/주관 : 경상남도·하동군/(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 주 제 : 자연의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편의점 운영 사업자 모집 변경공고

❍ 대상시설

구 분	개소수	형 태	영업품목	비 고
편의점	4	- MQ텐트(5m*5m) 4개(조직위 제공) * 운영사업자 제공시 컨테이너(3m*6m)도 가능	병·캔 음료, 빙과류, 과자 등 완제품	제1행사장 3 제2행사장 1

❍ 공모방법 : 일반경쟁입찰(지역제한 없음)

❍ 임대방법 : 1개업체 일괄임대

- 전체 임대장소 입괄입찰, 매장별 분리입찰 불가

❍ 임대기간 : 2023. 5. 4. ~ 6. 3.(31일간)

❍ 예정가격 : (기초금액) 13,000,000원 / 기초금액이상 최고가낙찰제

- 기초금액 이상으로 제출, 기초금액 미만으로 제시할 경우 자동으로 부적격 처리
-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함
- 엑스포조직위는 비영리법인으로 부가세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안 됨

❍ 입찰서 제출처 :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 입찰일정

인터넷 입찰 (온비드)				비 고
공고일자	입찰기간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3. 2. 23.(목)	'23. 2. 24.(금)10:00 ~ 3. 2.(목)16:00	'23. 3. 3.(금) 10:00	엑스포조직위원회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회는 미개최

2. 입찰참가자격

※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 중 공고일 현재 당해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 편의점 4개소를 운영 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증빙자료 : 차량등록증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본사에서 차량/컨테이너 지원이 가능한 경우) 또는 기타 증빙자료를 계약체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제출하지 못할 시, 낙찰자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 반환되지 않음.

❍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자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영업허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고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자

- 공고일 현재 당해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및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3. 입찰참가 방법 및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 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시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 2023. 3. 3.(금) 10:00, 엑스포조직위원회 입찰집행관 PC**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최고가로 입찰을 하였더라도 무효 처리하고 다음 순위 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다음 순위 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해당,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 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거나 소정기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예정가격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미달일 경우에는 낙찰 무효처리 후 입찰보증금은 조직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환불은 입찰 등록 시 제출된 환불계좌로 환불처리됩니다.

※ 임대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시 보증금은 참가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환급되며 이자 등 보증금과 관련된 일체의 별도 요구를 할 수 없음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은 무효처리되고 입찰보증금은 조직위원회로 귀속되며, 부정당한(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게 됩니다.

❍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책임입니다.

7. 계약 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 임대료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일시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장소 :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원탑1길 6 (구. 화개면사무소)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완납증명서 1부.
- 기타 입찰참가 자격 증명서류 각 1부.

※ 증빙자료 : 차량등록증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본사에서 차량 지원이 가능한 경우), 기타 증빙자료를 계약체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기 타 : 운영계획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각 1부.

※ 제출서류는 공증된 기관에서 발급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8. 낙찰자의 낙찰 후속 절차 이행

❍ 낙찰자는 당해 사업 영위를 위하여 낙찰자 명의로 인·허가 등을 필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관할 행정청의 영업신고증을 발급 후 지체없이 엑스포조직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엑스포 개장일인 **2023년 5월 4일**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제공시설

❍ 운영시간 : 2023. 5. 4. ~ 6. 3.(31일간)

❍ 영업준비 및 운영사항 : 조직위 제공 이외는 모두 운영사업자가 준비

〈조직위원회〉

- 전기 기본용량 : 5KW
- 상수도 및 통신은 연결 안 됨.

〈운영사업자〉

- 전기 연결, 카드단말기 설치 등

※ 통신은 제공되지 않으며 행사장 내 WIFI가 가능하므로 무선결제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사용하여야 함.

- 음식물 및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 및 주변 정리정돈

10.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 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영업시설 위반사항 처분 기준〉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붙임 1의 해당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는 허가받은 재산 내 영업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자동차관리 법령에서 정한 각종 인가·허가·신고·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엑스포 관람객 수 및 운영에 따른 매출액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시설 운영 관련 피해보상, 분실,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은 운영사업자 부담으로 의무 가입하여야 합니다.

❍ 판매품목 및 가격은 조직위와 협의·승인을 통해 결정하며, 가격 표시 및 재료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주류 판매 불가**

❍ 영업에 필요한 각종 용품 및 집기류등은 낙찰자 부담입니다.

❍ 모든 식자재 및 물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제규정을 준수하는 정식 유통망을 통한 제품만 판매해야 하며, 행사 기간 중 하동군에서 행하는 식품위생 점검·지도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혐오식품, 건강유해식품, 상표권 등 법규 위반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주 교육 및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를 영업준비 완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단정하고 청결한 유니폼과 위생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고,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임차받은 영업시설은 제3자에게 전매·양도 또는 담보제공 불가하며, 신용카드 결제기를 의무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제수단별 결제금액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 상기내용은 엑스포조직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엑스포조직위원회의 해석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 공고에 관한 사항은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055-880-70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3일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장

붙임1 **배 치 도**

❍ **제1행사장**(경남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07 일원, 하동스포츠파크)

구 분	개 수
T-FOOD	1개소
푸드트럭	1개소(7대)
편의점·카페	3개소

❍ **제2행사장**(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71-25 일원,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

구 분	개 수
편의점	1개소

※ 위치는 행사장 내에서 소폭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2 영업시설 위반사항 처분기준

번호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경우	계약해지	-	-
2	영업시설을 전대,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계약해지	-	-
3	예정된 일자에 영업을 개시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	-	-
4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계약해지	-	-
5	법규위반제품(유통기한 경과, 관련법규 미준수 제품 등) 판매	위반물품 회수	계약해지	-
6	조직위 승인 없이 판매물품 및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시정경고	계약해지	-
7	조직위 승인 없이 영업을 휴업하거나 단축·연장한 경우	시정경고	계약해지	-
8	영업 상황 확인 등을 위하여 영업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9	식재료 원산지 표시 미이행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10	부정한 방법에 의한 판매물품 등의 반·출입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11	지정된 영업시설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시정경고	계약해지	-
12	조직위 행정지도사항 미이행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13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14	영업자의 호객 행위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15	광고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시정경고	강제회수	계약해지
16	기타 법령 및 제규정, 지침, 지시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경고	2차경고	계약해지

붙임3 운영계획서 등 서식

편의점 운영계획서

※ 반드시 메뉴, 금액 등 운영관련 사항은 조직위와 협의 후 진행

1. 취급 품목 및 판매 계획

품 명(메뉴)	금 액(원)	시중 판매가(원)	비 고

※ 판매금액은 시중 판매가 수준으로 조정

2. 시설설치 계획

○ 시설 및 물건 배치 계획

- MQ텐트

3. 운영 계획

○ 재고관리, 입고, 판매방안

○ 배치인원

○ 복장 통일 계획 등

4. 위생 계획

○ 식품 안전 관리 대책 (식중독 예방 등)

○ 영업장 내·외부 청결 유지 계획

○ 위생 복장 착용 계획

○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포함) 처리 계획

5. 천재지변(태풍 등)에 대한 대비책

○

○

6. 기타 제안사항

○

○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귀하

위 임 장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식음시설 운영 사업자 선정에 따른 계약 및 서류 제출에 있어서 아래 사람을 위임자로 지정하고 위임장을 제출하며, 위임받는 자의 설명 및 답변 등 일체의 행위는 당사를 대표한 행위로 인정합니다.

업 체 명	위 임 받 는 자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20 년 월 일

위임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귀하

사 용 인 감 계

법인 인감	사용 인감

상기인은 2023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시행하는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식음시설 운영사업자 모집**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귀하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투명한 회계 질서 확립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있어 당사는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향후 경상남도와 하동군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참가 자격을 제한 받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발주관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자 선정,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향후 경상남도와 하동군이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상기 1, 2항의 사실이 드러나 낙찰자 결정 취소나 계약 취소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재)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귀하